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28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윤재옥ㆍ이인선ㆍ김 건

김기웅 · 김태호 · 최수진

정성국 • 이종배 • 엄태영

백종헌 · 이주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(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)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물류터 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,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저출생, 수도권 인구집중,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·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

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 항 등).

법률 제 호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 전단 중 "시·도지사"를 "시·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3조, 제20조의2제1항·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에서 같다)"로 한다.

제20조의2제2항제2호 중 "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)"를 "시·도지사"로, "시·도지사"를 "시·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·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·신고나 그밖의 행위로 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조(공사시행의 인가) ① 복합 제9조(공사시행의 인가) ① -----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 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며, 일반물류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 ----시·도지사(「지방자 요한 경우 시·도지사의 공사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. 인가 치법 . 제198조제1항에 따른 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 서울특별시 · 광역시 및 특별자 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말한다. 이하 이 조. 제13조. 제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20조의2제1항·제2항 각 호 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의 부분 및 제21조에서 같다)-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매장과 그 매장에 포함 되는 용역의 제공장소(이하 "점포등"이라 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 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

2	\sim	5	(생	략)
	\sim	(2)	(~%)	4)

- 제20조의2(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공사시 행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.
 - 1. (생략)
 - 2. 주변의 상권 및 산업단지 수 요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물류터미널이 소재하는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)와 협의하고, 일반물류

·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의2(물류터미널의 활성화
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
9
1. (현행과 같음)
2
<u>\</u> \]•
도지사
<u>\lambda\] •</u>

지사는 해당 물류터미널이 소 재하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과 협의할 것

터미널사업에 대하여 시·도 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98 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 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)-

3. (생략)

3. (현행과 같음)